#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병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716

발의연월일: 2022. 12. 7.

발 의 자: 안병길 · 김선교 · 구자근

이주환 • 권명호 • 류성걸

박대수 · 이종배 · 최춘식

김희곤 • 유의동 • 백종헌

이종성 의원(13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종이형태로 만 발급이 가능하며,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(이하 "전자처방전"이라 함)의 발급은 불가 능한 실정임.

한편, 「의료법」 및 「수의사법」에서는 의사나 수의사로 하여금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, 수산질병관리사 또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효율적인 질병관리 업무의 수행과 함께 의약품의 오·남용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이에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과 동시에, 진료부 및 검안부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 · 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산생물질병 관리업무에

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10제1항, 제37조의11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10제1항 본문 중 "처방전"을 "처방전(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. 이하같다)"으로 한다.

제37조의1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"를 "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 된 전자문서로 작성·보관할 수 있다.
- ③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,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37조의10(진단서 등) ① 수산질 제37조의10(진단서 등) ① ---병관리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 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처방전(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된다. 다만, 직접 진료하거나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가 부득 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 이한 사유로 진단서, 검안서 또 다. 이하 같다)-----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산질병관리사 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. ② ~ ⑧ (생 략) ② ~ ⑧ (현행과 같음) 제37조의11(진료부 및 검안부) 수 제37조의11(진료부 및 검안부) ① 산질병관리사는 진료부 및 검 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 -----진료하거 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1 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명하여야 한다. <신 설> ②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「전

	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이
	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・보관
	<u>할</u>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③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
	사항,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,
	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
	산부령으로 정한다.